

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0. 4. 29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0. 5. 6

다. 상정일자 : 제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2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생연1동사무소는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적절치 않으므로 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함.
- 생연2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의 잦은 회의, 모임등 다목적 활용이 예상되므로 당초 중대본부만(35평) 증축하려던 계획을 80평으로 상향 조정코자 함.
- 수해상습지 종합 치수 대책사업의 일환인 빗물펌프장 운영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 현재의 차고와 기사대기실 부지에 종합상황실 및 건설과, 기사대기실, 차고를 증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취득예정 재산현황(토지)

재 산 의 표 시				취득 면적 (㎡)	공시지가 (㎡당,원)	매 수 예정가 (천원)	소유자	비 고
소재지	지 번	지목	면적 (㎡)					
생연동	462-8	전	3,434	3,434	25,600	270,000	평해황씨 중증	자치센터부지 선정은 생연1동 주민공청회실시후 확정

○ 취득예정 재산현황(건물)

(단위:m²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취득면적		건축예정가			비고
건물명	위 치	면 적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증감액	
생연2동 사무소	생연동 808-4	602.8	116	264 (80평)	100,000	222,700	122,700	
시청사	생연동 483-1	6,464	-	882 (267평)	-	815,000	815,000	건설과 종합상황실, 사무실, 기사대기실, 차고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당초 토지취득 1건 520백만원, 기타취득 1건 300백만원등 2건 820백만원에서 토지취득 1건 270백만원과 건물취득 2건 1,038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5건 2,128백만원을 취득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각됨.

현행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1,000m²이상인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(반대토론 : 박수호 부의장)

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건은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, 전국 시장, 군수,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재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시점에 있음.

따라서 우리시의 경우에도 각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면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, 생연1동사무소의 건물의 노후와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면적이 적어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생연1동부지 매입의건으로 변경하

여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, 본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토지취득의 건은 부결하고 건물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코자 함.

6. 심 사 결 과

“ 수정가결 ”

○ 취득예정 재산현황(토지)

재 산 의 표 시				취득 면적 (㎡)	공시지가 (㎡당, 원)	매 수 예정가 (천원)	소유자	비 고
소재지	지 번	지목	면적 (㎡)					
생연동	462-8	전	3,434	3,434	25,600	270,000	평해황씨 중증	“ 부 결 ”

○ 취득예정 재산현황(건물)

(단위:㎡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취득면적		건축예정가			비 고
건물명	위 치	면 적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증감액	
생연2동 사무소	생연동 808-4	602.8	116	264 (80평)	100,000	222,700	122,700	“ 가 결 ”
시청사	생연동 483-1	6,464	-	882 (267평)	-	815,000	815,000	“ 가 결 ”